

## Ⅱ.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 1. 도입배경

□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단일사용자제도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입 및 운영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단일사용자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별사업장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로 단순히 “단독형”이라 언급되기도 함.

○ 대기업의 경우 단일사용자제도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단일사용자제도가 가입 및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퇴직연금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형 제도의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퇴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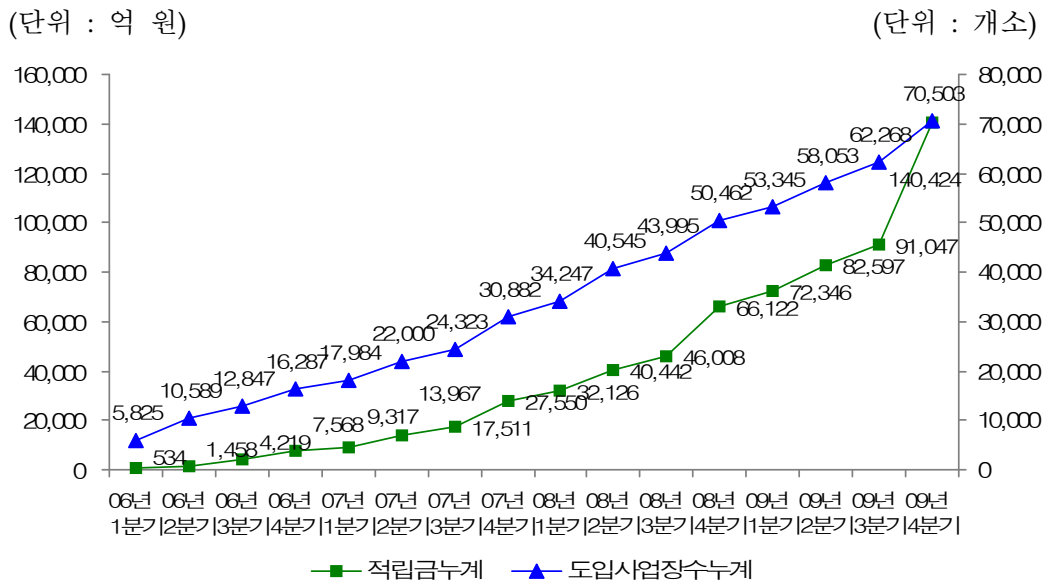
□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양적인 성장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가입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으로 질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퇴직연금제도 시행 초기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에서 최근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적

립금 및 사업장 수의 증가율이 크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2009년 12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조 424억 원으로서 전 분기 대비 54.2%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업(5인 이상)중 70,503개 기업이 가입하여 전 분기 대비 13.2% 증가함.

<그림 1> 퇴직연금 적립금 및 사업장 수 증가 추이



-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중은 DB형(65.8%) > DC형(25.5%) > 개인퇴직계좌(8.7%) 순으로 나타나 DB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 그 결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금융권역별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현황

(단위 : 억 원, %)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 IRA <sup>3)</sup>	개인형 IRA	
적립금 (비율)	140,424 (100)	100,697 (65.8)	29,832 (25.5)	3,762 (3.3)	6,133 (5.4)	
업 권 별	은행 (비율)	68,077 (48.5)	43,103 (42.8)	17,506 (58.7)	3,677 (97.7)	3,508 (57.2)
	생보 (비율)	47,053 (33.5)	41,330 (41.0)	4,259 (14.3)	67 (1.8)	1,463 (23.9)
	증권 (비율)	16,585 (11.8)	9,118 (9.1)	6,686 (22.4)	10 (0.3)	276 (4.5)
	손보 (비율)	8,709 (6.2)	7,146 (7.1)	1,381 (4.6)	8 (0.2)	166 (2.7)

주 : 업권별 협회에 실적을 제출한 운용관리기관 기준이며, '09.12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퇴직  
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기관은 53개소임.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2010.2

-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10인 이하 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즉,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4.7%인 반면, 10인 이하 소기업은 2.9%에 불과함.
-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 수가 최근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수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6.3% 증가하는데 그쳐 퇴직연금의 신규 계약체결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기업형 IRA는 퇴직연금 운용이 어려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도입할 수 있는 형태이다.

## <표 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제도 가입 현황

(단위 : 개소, %)

\사업장 수	중업원 수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①가입사업장수	36,555	20,741	9,911	2,530	371	395
②전체사업장수	1,214,440	161,250	45,973	8,962	1,173	1,014
비율(①/②)	2.9	12.3	20.3	26.0	27.9	34.7

주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분류 297개('09)와 행정안전부 분류 지방공기업 149개('08)을 합한 총 446개소 중 91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0.4%임  
 자료 :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2010.2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에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낮고, 퇴직연금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단위당 수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 위주로 퇴직연금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임.
-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가입률을 제고시키고 DC형 퇴직연금의 부진<sup>4)</sup>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어 왔음.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관리비용과 수수료 등을 절감시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사업장이 금융회사와 운영·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로 계약 시 과도한 고정비(Fixed Cost)와 적립금 운용에 따른 과도한 변동비(Variable Cost)가 발생함.
- 즉, 개별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계약체계 하에서는 규모의 경

4)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부채관리 등에 대한 부담이 없는 등의 이유로 DC형 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제가 부재하여 고정비 및 변동비가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 전가될 염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 및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발생할 여지가 높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분석됨.

## 2. 주요내용

□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복수사용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도입될 복수사용자제도는 일본과 홍콩의 도입사례를 참고로 하여 대표사용자형과 표준형으로 구분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대표사용자형은 DC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대표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
- 표준형은 다수기업에게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표 3> 단일사용자제도와 복수사용자제도의 특징

	단일사용자제도	복수사용자제도
제도대상	DB형, DC형	DC형
사업자수	단일기업	복수기업
관리비용 (수수료 등 포함)	높음	낮음
인적 또는 자본관계	없음	있음

<표 4> 복수사용자제도에 대한 근퇴법 개정안

근 거 법	내 용
<p>근퇴법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 설립)</p>	<p>① 둘 이상의 사용자가(이하 “사용자들”이라 한다)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li> <li>2. 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사용자를 제도를 대표하는 자(이하 “대표사용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p> <p>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대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산한 경우</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li> <li>3.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22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ol> <p>④ 제2항의 대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규약의 작성 및 변경</li> <li>2. 그 밖의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li> </ol> <p>⑤ 제2항의 대표사용자는 제2항 단서의 등록 없이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2항의 대표사용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복수사용자제도를 DC형 퇴직연금에만 한정하지 않고 DB형에도 적용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사용자형 및 표준형이 있으나 일본의 경우 연합형 및 종합형 방식이 있으며, DB형 퇴직연금에서는 일정한 근로자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요건이 있음.<sup>5)</sup>

- 일본의 연합형은 자본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형태이며, 종합형은 자본관계 없이 동종업계 또는 동일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 대표사용자형은 일본의 연합형과 종합형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표 5> 한국과 일본의 복수사용자제도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제도유형	규약형	규약형, 기금형
형태	대표사용자형 표준형	연합형 종합형
적용제도	DC형	DB형, DC형
근로자수 제한	없음	있음(DB형)

- 우리나라의 복수사용자제도는 사용자들 간의 이해충돌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DC형 퇴직연금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복수사용자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들은 적립금운용과 운용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연합해서 부담하므로, 사용자들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복수사업자 중 어느 한 기업이 부도 시 우량기업이 부도기업 근로자의 급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sup>6)</sup>, 특정 금전신탁의 운용지시를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높음.

5)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수사용자제도의 유형은 분류기준상의 용어의 차이일 뿐 일본에서도 대표사용자형과 표준형의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적용범위 및 법적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6) 미국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Multi-employer Plan)가 DB형 퇴직연금에도 적용되며 실제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다.